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30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건강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시정 전반에 건강 관점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건강총괄관’ 위촉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지
역보건의료계획과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간 연계를 위한 조
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계 관련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제3항)
- 나. ‘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 수당,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8조 ~ 제3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4. 24. ~ 4. 30.)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김서연 (☎02-2133-751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서울건강총괄관의 운영”으로 한다.

제28조를 제33조로 하고, 제28조의2를 제33조의2로 하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한다.

제5장에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서울건강총괄관의 위촉) ① 시장은 시정 각 분야에서 시민의 건강을 연계한 정책 수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건강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울건강총괄관

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민간(기업, 언론,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석사,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서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9조(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 등) ① 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전반에 걸친 시민 건강 관련 정책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자문
2. 시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자문
3. 취약계층 지원 등 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자문
4.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전략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서울건강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서울건강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지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서울건강총괄관의 임기) 서울건강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건강총괄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서울건강총괄관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건강총괄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서울건강총괄관 스스로가 위촉 해지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② (생략) <u><신 설></u> 제5장 <u>보칙</u> <u><신 설></u>	제5조(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5장 <u>서울건강총괄관의 운영</u> 제28조(서울건강총괄관의 위촉) ① 시장은 시정 각 분야에서 시민의 건강을 연계한 정책 수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건강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민간(기업, 언론,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석

<신 설>

사,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서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9조(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 등) ① 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전반에 걸친 시민 건강 관련 정책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자문

2. 시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

리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자문

3. 취약계층 지원 등 건강복지
정책에 관한 자문

4.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환경
구성 전략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서울건강총괄관의 업
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서울건강총괄관은 직무상 알
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
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
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
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④ 서울건강총괄관은 「서울특
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서울건강총괄관의 임기)
서울건강총괄관은 비상근직으

<신 설>

<신 설>

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
울건강총괄관에게 수당 및 여비
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수
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서울건강총괄관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건강
총괄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서울건강총괄관 스스로가 위
촉 해지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
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
이 있거나 서울건강총괄관으
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u>밖의 사유로 인하여 서울건강 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u>
<u><신 설></u>	<u>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u>
<u>제28조</u> (생 략)	<u>제6장 보칙</u>
<u>제28조의2</u> (생 략)	<u>제33조</u> (현행 제28조와 같음)
	<u>제33조의2</u> (현행 제28조의2와 같 음)
<u>제29조 ~ 제33조</u> (생 략)	<u>제34조 ~ 제38조</u> (현행 제29조부 터 제33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장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에서 ‘서울건강총괄관’을 위촉하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자격기준, 업무범위, 임기,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안 제28조제2항제4호의 자격요건인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을 참고하여 인건비는 3급 연봉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

※ 3급(상당) 공무원 연봉 상한액(110,826천원)을 시간당 수당으로 계산(25년 지방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 비용은 2025년 8월부터 발생하고 향후 5년간 소요비용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서울건강총괄관 수당	16,792	40,300	40,300	40,300	40,300	177,992
	소계(a)	16,792	40,300	40,300	40,300	40,300	177,992
수입	◦ 해당없음	-	-	-	-	-	
	소계(b)	-	-	-	-	-	
□ 총 비용(a-b)		16,792	40,300	40,300	40,300	40,300	177,992

※ 수당은 3급 공무원 연봉 상한액(110,826)을 시간당 수당(52,474원*)으로 환산하여 추계

* 52,474원 = 110,826천원/2,112시간(주 40시간 × 4.4주 × 12개월)

※ 1차년도는 시행일 2025년 8월(5개월)을 기준으로 추계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16,792	40,300	40,300	40,300	40,300	177,992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16,792	40,300	40,300	40,300	40,300	177,992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없음

6. 작성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보건정책팀장 백명철

담 당 자 김서연(02-2133-7512, syon0211@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서울건강총괄관 총 비용(합계) ≒ 177,992천원(연평균 35,598천원)

- 산출방식 : 연간(2025~2029) 비용의 합산

 : 40,300천원* × 4년('26.~'29) + 16,792천원('25.7.~12.)

 ≒ 161,200천원 + 16,792천원 ≒ 177,992천원

* 연간 서울건강총괄관 수당

 = 3급 공무원 최대연봉액의 시간급 환산액 × 주2일 전일 근무가정 시 연 근무기간

 = 52,474원 × 8시간 × 2일 × 4주 × 12개월 = 40,300천원